

◀ **취로형 근로 참여조건** ▶

1.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「2015년도 취로형근로사업」
참여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. 사업(업무)내용 등 참여조건

- 사업(업무)내용 : “2015년 취로형근로사업”
- 작업장소 : “oo동주민센터”
- 자활급여 등 참여조건
 - 사업기간 : 2015. . . ~ . . .
 - 1일의 급여 : 21,800원(실비제외)
 - 일일급여로, 지급방식은 근무월 익월 5일 이내 월급형태로 지급
 - 지각,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
 -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월(1월)내의 기간동안 개근했을 경우 익월에 월 1회 월차 유급휴일 부여(단, 1월동안 실제근로일수가 12일이상일경우)
 - 1일 교통비 등 실비 3,000원 지급(근무일에 한함)
- 근무조건 : 주4일 참여(월15일 이내)
- 근무시간
 - 월~금요일 1일 5시간(09:00~15:00) 시간제 근무
 - * 동별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기재
 - 하·동절기 구분없음
-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 * 동별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기재

3. 기타 사항

- 취로형근로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.
 - ※ 자치단체별 조건이행 판단기준이외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『2015년도 자활사업지침』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계획을 준용하며, 정부방침의 변경, 구 자체사정에 따라 참여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15. . .

성동구청장 정 원 오

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,
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입니다.

홍길동 ***** ○○동 ○번지 홍길동(서명)